제117회 창원시의회(임시회)
제4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 [2022. 7. 22.(금)]

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창 원 시 의 회
문화환경도시위원회

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2. 7. 22.
문화환경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: 2022. 7. 12. 창원시장

나. 회 부 일 자: 2022. 7. 13.

다. 상 정 및 의 결 일 자: 제117회 창원시의회(임시회) 개회 중
제4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(2022.7.22.) 상정, 질의・답변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하수도사업소장 제종남)

가. 제안이유

❍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 설치 이후 개최 실적이 저조하고 물 재이용 관련 제도의 정착 등에 따라 존속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폐지됨에 따라 2012년 조례 제정 이후 개최하지 않은 창원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폐지하고, 단순 법령 사항을 재기재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법령과 부합하도록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나. 주요내용

❍ 법령에서 명시한 정의는 위임에 따라 만든 자치법규에 모두 적

용되므로 단순히 법령을 재기재한 정의와 조례에서 사용하지 않는 “침투시설”, “저류시설” 용어를 삭제함(안 제2조)

❍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을 정비(안 제5조)

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→「물환경보전법」

❍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을 삭제함(안 제12조 ~ 제17조)

다. 참고사항

❍ 관계 법령: 의안번호 13, P9 ~ P10

1) 「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

2) 「물환경보전법」 제49조

❍ 예산 조치: 해당사항 없음

❍ 합　　의: 해당사항 없음

❍ 기　　타

1) 신·구조문대비표: 의안번호 13, P4 ~ P8

2) 입법예고(2022. 5. 11. ~ 5. 31.): 제출 의견 없음

3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평가 결과: 개선사항 없음

5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6) 현행 조례: 의안번호 13, P11 ~ P15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(전문위원 박선희)

□ 개정 배경(필요성)

❍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개최 실적 및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개정 등을 고려하여 조례 일부를 개

정하고자 함.

□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가. 안 제2조(정의)는

○ 단순히 법령을 재기재한 정의와 조례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 사료됨.

나. 안 제5조는

○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[1] 변경에 따른 정비 내용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다. 안 제12조 ~ 제17조는

○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(물 재이용 정책위원회의 설치 등)를 준용하여 설치한 자문기관인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.) 개최 실적저조와 물 재이용 관련 제도의 정착 등에 따른 준용 법률 조항 삭제 등을 고려하여 정비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 사료됨.

□ 종합의견

○ 금회 조례개정은 조례 제정(2012.10.29. 제549호) 후 위원회 개최 실적과 물 재이용 관련 제도의 정착 등에 따라 존속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○ 다만,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

---

1) 법률 제14532호 2017.1.17. 시행 2018.1.18.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 (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⇨ **「물환경보전법」**)

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에 있어 조례 일부 개정(위원회 설치 근거 등 삭제)으로 물의 재이용에 대한 정책 등에 자문이 있을 경우에 처리방안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·답변요지 : 기재 생략

5. 토론(대체토론)요지(주요문제점) : 없음

6. 심사결과 : **원안 가결**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(부대의견, 건의사항, 촉구사항 등) : 없음